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시행 2021.10.12] [순천대학교학교규정 제1077호, 2021.10.12, 전부개정]



인권센터 061-750-31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 and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순천대학교 학칙 제20조에 따라 순천대학교 인권센터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며,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구제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성별, 국적, 장애, 직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4대 폭력"이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정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구성원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장 조직과 기능

제1절 조직과 기능

제5조(조직과 기능) ① 센터에 인권상담실,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조사 위원회, 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며, 센터장, 행정실장, 전문상담원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4대폭력 예방교육
2. 인권상담실 및 각종 위원회 운영
3. 사건처리 지침 마련 및 사건처리
4. 사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2절 인권상담실

제6조(구성과 기능) ① 인권상담실에 약간 명의 전문상담원 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대학교 교직원 또는 교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전문상담원 또는 상담위원은 인권상담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접수, 상담과 조사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조사

제7조(전문상담원의 자격)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여성가족부 고충상담원으로 위촉된 사람
2. 인권 또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인권 또는 성 문제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문제 또는 성폭력 예방 및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인권상담실 지원) ① 총장은 전문상담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과 고충 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외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신규 임명된 전문상담원이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전문상담원이 상담 및 신고 업무를 처리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절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제9조(구성)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책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센터장, 임명직으로 교원위원 4명, 직원위원 2명, 조교위원 1명, 학생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이 경우 교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여성위원은 5명(교원 3명, 직원 1명, 학생 1명)이상이어야 한다.
- ③ 대책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센터장은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위하여 대책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④ 대책위원회 임명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대책위원회 위원과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권센터 직원으로 한다.
- ⑥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그 직위 수행 중에만 위원으로 한다.

제10조(기능)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 차별 여부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여부의 결정·조정·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차별의 예방,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② 대책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센터장이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 2. 대책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3. 대책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④ 센터장은 대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그 사건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위원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성위원은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구성된 위원 중에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다.
- ④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서면 보고
 -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자의 진술 청취
- ② 조사 기간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거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절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직원으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상담실, 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
5. 규정과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장 상담·신고 및 조사

제15조(상담 및 신고)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서면, 온라인(전자우편, SNS 등) 및 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실에 신청하거나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이 대학교 게시판이나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할 경우 제3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각 부서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인권센터로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면 센터장은 즉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또는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센터장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경과 및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조사 내용을 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신고와 관련한 심의 등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조사 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정·중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인과 피해자가 조사 종료를 요청할 경우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4장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등 보호

- 제17조(징계 등 요청)** ① 조사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위원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이 대학교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되면 센터장은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대책위원회는 징계 요청과는 별도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 행위를 반복할 때는 총장에게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징계)** ①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징계 등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2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고,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자이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자를 엄중히 징계한다.
- ③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의원면직 또는 학적 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9조(제척)** 인권센터 구성원, 대책위원회, 조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사건의 처리를 위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 제20조(기피)** ①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사건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경우
 2.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기피는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1조(회피)**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20조의 기피 사유가 있을 때 회피를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2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될 때 신고를 각하한다.
- 제23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곧바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 보호)** ①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 신고인, 조력자, 고충 제기, 고충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총장은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안내,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 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진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업무·부서 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 유지) ① 인권침해 및 차별, 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사건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 비밀을 업무와 관계없는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건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와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경우나 법률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인권침해 및 4대폭력 예방 조치

제27조(조치 의무) ① 총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4대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창구의 설치·운영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처리 절차 마련
4.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6.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제28조(4대 폭력 예방교육) ① 총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 활동, 예방교육 운영 등에 관한 연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성희롱예방·성폭력예방·성매매예방·가정폭력예방 교육을 각 1시간씩, 1인 총 4시간 이상 실시하되, 교육 중 최소한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등 4대폭력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기타 4대 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6장 보칙

제29조(협력 의무) 이 대학교 내 모든 기관과 부서의 구성원은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등 경비) ① 센터와 인권상담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인권상담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교외 위원의 수당, 여비, 자문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82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 본문 중 "제12조(부속시설 등 설치)"를 "제5조의 9(인권센터)"로 한다.